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10.18 조례 제107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적극적인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 ② “장애인”이란 제1항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 ③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
- ④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유엔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 ⑤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책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 ① 시장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거나 인권침해를 당하지 아니하고 지역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 ②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시가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제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 ③ 시민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제2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와 시책방향,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 사업계획
2.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를 조사하기 위한 지표 개발
4.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방안 및 재원 조달 방안
7. 기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공고절차 등을 거쳐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를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 세부추진방안
2. 여성장애인,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
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
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계획

제8조(정책개발)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개발을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추진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실태조사 및 장애인 복지역량조사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개선사항

제9조(교육실시) ① 시장은 시 및 소속기관, 장애인·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및 국제관 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 선언 등

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
  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강사 등 전문 인력에 관한 사항
  4.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재 발간에 관한 사항
  5. 이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 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권리구제 등에 관한 홍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연간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상시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 인터넷 문서와 배너 광고를 제작하여 시 홈페이지 삽입 및 운영
2. 안내서, 반상회보 등을 비롯한 각종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제3장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

제11조(위원회) 시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하기 위하여 하남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

제1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지역실정에 맞는 정책개발,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 및 홍보계획과 이행보고서 및 자체평가
3. 그 밖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등
4.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 소속기관의 공무원을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애인 차별과 인권에 대해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되 장애인 당사자를 3분의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인단체
2. 시민단체
3. 법조계
4. 학계 전문가
5. 하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6. 기타 시장이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해촉할 수 있다.

-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제1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수당 등) 이 조례에 정한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하남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